

원문정보 공개제도에 대한 공무원들의 인식조사 연구

A Study on the Government Full-text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through the Survey on the Government Officials' Perceptions

장 보 성(Bo-Seong Jang)*

<목 차>

I. 서론	1. 제도운영의 이해도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 원문정보 공개제도의 순기능
2. 연구범위와 방법	3. 원문정보 공개제도의 역기능
3. 선행연구	4. 원문정보 공개제도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
II. 이론적 배경	5. 원문정보 공개제도 활성화를 위한 요인
1. 원문정보 공개제도의 개념	V. 결론
2. 원문정보 공개제도 운영실태	
III. 연구 설계	
IV. 설문결과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원문정보 공개제도의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원문정보의 생산자이며 의사결정자인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원문정보 공개제도에 대한 이해도, 제도의 순기능 및 역기능, 제도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 및 활성화를 위한 요인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분석결과, 공무원들의 원문정보 공개제도 이해는 제도의 법적 근거, 공개절차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결과가 나타났다. 원문정보 공개제도의 순기능과 역기능은 행정의 투명성 확보, 국정운영 참여 활성화,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측면에서 순기능적 기대치가 높았으며, 행정적인 업무 부담 증가, 공무원의 사기저하, 국민사이의 정보격차 발생을 역기능으로 우려하였다. 원문정보 공개제도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은 민원인에 의한 원문정보 오남용, 제도 확대에 따른 업무량 과다, 원문정보 공개에 따른 심리적 부담감, 기관마다 상이한 원문정보 기준 순으로 나타났다. 원문정보 공개제도 활성화 요인으로 원문정보 오남용 방지 대책 마련, 원문정보 공개 절차 및 원칙에 대한 사전 교육, 비공개 원문정보 공개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제시, 공무원 대상 교육 및 부정적인 인식 개선 등이 제시되었다.

키워드: 원문정보, 원문정보공개, 정보공개, 정보공개법, 공무원, 인식조사

ABSTRACT

This study is intended to analyze the actual condition of operating the full-text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of government and Officials' Perception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analysis, the public servant group's level of full-text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was high. With regard to the positive and negative function of full-text information disclosure, an expectation for positive function was high in the aspect of assuring the transparency of administration. And public servants were worried about an increase in the burden of administrative duties. With regard to factors in hindering the development of full-text information disclosure, it was shown that the percentage of clients' abuse and misuse of full-text information was the highest. For the activation of full-text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it is necessary to prepare measures for preventing the abuse and misuse of full-text information.

Keywords: Full-text information, Full text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Immediate disclosure of original official documents, Information disclosure, Government officials' perceptions.

* 국립중앙도서관(국립장애인도서관) 자료개발과 사무관(club301@hanmail.net)

•논문접수: 2016년 2월 26일 •최초심사: 2016년 2월 26일 •게재확정: 2016년 3월 22일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7(1), 339-360, 2015. [http://dx.doi.org/10.16981/kliss.47.201603.339]

I.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정보공개제도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 중 생산·접수하여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다. 정보공개제도는 1996년에 제정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동 법률은 국민의 정보공개 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여러 차례(2006년, 2008년, 2013년) 개정되었다.

정보공개제도는 ‘정보공개 청구’, ‘사전정보 공표’, ‘원문정보 공개’로 구분된다. ‘정보공개 청구’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는 제도이며, ‘사전정보 공표’는 국민들이 정보공개를 청구하기 전에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선제적·능동적으로 공개하는 제도이다. ‘원문정보 공개’는 공공기관 중 중앙행정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공개대상으로 분류된 정보를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제도이다(정보공개법 제8조의2(공개대상 정보의 원문공개)).

최근 정부는 정보공개 패러다임을 국민중심의 선제적 원문정보 공개로 전환하였다. 원문정보 공개는 그 동안의 비공개 관행에서 벗어나 정보공개를 확대함으로써 정부의 업무투명성을 제고하고 수요자 중심의 정보공개 활성화에 기여한다. 또한, 개인정보, 의사결정과정 정보 등의 공개 및 비공개 분류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기관별, 개인별 정보공개의 일관성을 유지한다.

원문정보 공개에 따른 정보공개 처리방식은 문서의 공개 분류와 정보공개 결정이 한 번의 절차로 처리되며, 공개 분류된 문서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즉시 외부에 공개된다. 공개된 문서는 누구나 원하는 시간에 제공받을 수 있다(국민권익위원회 2014, 55). 이에 일부 공공기관의 담당자 실수로 원문정보 공개문서에 개인정보 노출 사례 등이 발생한다. 따라서 모든 업무 담당자가 원문정보 공개 시 해당원문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정보공개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갖출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원문정보 공개제도의 운영 실태를 조사·분석하고, 원문정보 공개제도에 대한 공무원들의 이해도와 순기능 및 역기능, 제도 발전의 저해요인 및 활성화 요인에 대하여 조사하고자 한다.

2. 연구범위와 방법

연구대상은 공공기관 중 중앙행정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종사하는 공무원들이다. 공무원은 원문정보를 생산하는 생산자이자 정보제공자이다. 또한 원문정보공개여부를 결정하는 의사결정자이다. 이들의 원문정보 공개제도에 대한 이해도와 인식의 차이가 제도 운영상의 결과와 현실에 부합되는 활성화 영향요인 도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연구방법은 문헌조사방법과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문헌조사는 정보공개제도 및 원문정보 공개제도에 대한 국내·외 문헌자료, 통계자료, 정부부처 공개문서 등을 활용하였다. 설문조사는 국가직 및 지방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유의표본 추출방법을 시행하였다. 유의표본 추출방법은 조사자가 표본을 자의적으로 편중되게 추출하는 방법이다. 공무원은 직책과 담당업무에 따라 1년에 단 한건의 전자문서를 생산하거나, 결재한 적이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 따라서 2014년 이후 온나라시스템을 통하여 최소 10건 이상의 전자문서를 생산하거나 결재한 적이 있는 공무원으로 표본을 제한하였다¹⁾.

3. 선행연구

최정민, 김유승(2013)은 정보공개제도와 연계된 복수 학문분야의 연구논문 97편을 분석한 결과, 정보공개제도가 기록관리, 법제도, 데이터 활용 등 다양한 이슈를 내포하는 복합적 영역이며, 이를 고려할 때 확장된 정보공개 개념의 다학제적 융합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즉, 지금까지의 정보공개에 관한 연구는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인식과 만족도 연구, 기관 입장에서 기관 요인과 공개율, 정보공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최정민 2015).

원문정보 공개제도에 관한 연구는 앞서 언급한 정보공개제도 연구에서 부분적으로 진행되었다. 본 연구 주제와 관련이 있는 주요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정민영(2015)은 원문정보 공개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방대한 서비스 대상 기록물 처리를 위한 전담부서 설치, 원문정보 공개율 유지를 위한 무의미한 원문정보 기록물공개 지양, 비공개 기록물 결정기준 상세화, 원문공개 시스템과 각 기관 문서생산시스템과의 연계대상 확대 및 분류체계 매핑, 개인정보 필터링 기능 개선을 제안하였다.

김혜원(2014)은 중앙행정기관 담당자를 중심으로 사전정보공개 제도의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그는 정보공개 업무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사전정보공개 업무를 주관하고 기록연구직은 현용기록물 서비스와 관련된 업무를 지원한다. 사전정보공개 운영 절차를 각 기관의 정

1) 2014년 이후 온-나라 시스템을 통하여 전자문서 생산 또는 결재 시 원문정보공개 여부를 필수사항으로 선택해야 함.

4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47권 제1호)

보공개 관련 규정에 명시하여 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며, 공개정보에 대한 홍보 및 사전정보 공개목록과 정보공개목록을 통합하여 검색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다음으로,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인식조사 연구는 다음과 같다. 안은정(2013)은 정보공개제도에 대하여 교육행정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식과 태도, 업무, 기능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고 배경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지식과 태도는 대체로 높게 나타났지만, 정보공개를 꺼리는 경우가 많았으며, 공개와 비공개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응답이 높았다.

한국행정연구원(2010)은 정보공개 청구경험이 있는 일반시민과 중앙부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비공개 대상정보의 구체적 명시, 공개결정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비공개결정 시 세부지침 마련, 기관 간 일관성 있는 공개결정 확립, 공무원의 자의적 결정 방지가 필요하며, 정보공개를 꺼리는 조직 문화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한편, 원문정보 공개에 따른 정보공개포털에 대한 선행연구도 최근에 증가하는 추세이다(김승태, 2009; 홍석형 2014; 정진임, 김유승, 2014; 황진현, 임진희, 2015). 정보공개포털은 미국, 영국의 이용자 중심 전자적 원문정보 포털을 벤치마킹하여 시스템을 설계하고 운영 중에 있다.

이상과 같이 원문정보 공개제도는 정보공개제도의 범주에서 연구되어 왔으며 본 연구와 같이 별도의 주제영역으로 특화되어 연구된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특히 원문정보를 생산하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원문정보 공개제도에 대한 설문조사와 인식의 차이를 도출한 연구는 없으며, 이점에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과의 차별성이 있다.

Ⅱ. 이론적 배경

1. 원문정보 공개제도의 개념

가. 개념 및 대상기관

고전적 자유주의에 뿌리를 두었던 초기 정보공개제도는 청구에 의한 수동적 정보공개제도였다면, 최근에는 선제적, 능동적 정보공개에 기반을 둔 공유의 개념으로 진화하고 있다(서울특별시 2015, 16).

대한민국 정부 역시 그간 국민의 정보 청구에 대응하는 수동적인 정보 제공에서 개방·공유·소통·협력의 가치를 지향하는 정부 3.0 시대를 실현하고자 공개대상 전자결재 문서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국민들이 직접 볼 수 있는 ‘원문정보 공개제도’를 도입하였다.

‘원문정보 공개제도’의 법률적 근거는 정보공개법 제8조2(공개대상 정보의 원문공개)와 동법 시행령 제5조의2(원문공개 대상기관)이며, 원문공개 대상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준정부기관이다.

〈표 1〉 정보공개포털 사이트의 원문정보 공개대상

연도	원문공개 대상 기관
2014년 3월	- 온-나라시스템 이용기관(중앙부처, 광역시도, 시군구) - 중앙행정기관 및 위원회(48), 광역자치단체(17), 기초자치단체(69)
2015년 3월	- 전자결재시스템 이용 기초자치단체 및 교육청 - 기초자치단체(157), 교육청(17)
2016년 3월	- 공기업(시장형, 14), 공기업(준시장형, 16), 준정부기관(기금관리형, 17),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 69)

〈표 1〉과 같이 원문정보 공개를 단기간에 시행할 수 있는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자치단체부터 실시하고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및 교육청(학교) 등은 연차적으로 실시한다. 금년(2016년) 3월이면 공기업, 준정부기관까지 모든 기관이 원문공개 대상기관이 되며, 공개대상 원문정보는 2014년 3월 21일 이후 국장급(시군구는 부단체장)이상 결재문서 중 ‘공개’로 분류된 문서이다(행정자치부 원문정보공개가이드 2014, 1).

한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기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공단,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 특수법인 및 사회복지법인은 기관 규모 및 자율성을 고려하여 원문정보 공개에서 제외한다.

나. 원문정보 공개 시 유의사항 및 공개원칙

국민들은 정보공개포털에 접속하여 원문정보 및 사전정보 공포자료를 검색하고 내려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원문공개 대상기관은 생산정보에 대한 공개 및 비공개 분류 업무에 대한 사전교육 실시, 공개대상 원문정보 목록 정비, 비공개 원문정보에 대한 확인 등의 선행 업무처리가 필요하다. 원문정보 공개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행정자치부 원문정보 공개가이드 2014, 2).

첫째, 문서 작성 시 공개 여부 분류를 명확히 검토한다. 1건의 문서에 대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제1항 각 호의 비공개 대상 해당 여부를 모두 검토한 결과에 따라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비공개 분류 원문에 대한 공개 청구가 있으면 공개 여부를 별도로 검토하며, 비공개시 청구인은 불복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기안문(붙임 포함)에 개인정보 등의 비공개 문서를 포함할 경우, 부분공개 또는 비공개로 분류한다. 이미지를 포함한 전자문서,

스캔파일(PDF, tif)은 개인정보에 대한 필터링이 불가하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둘째,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공개 대상이다. 문서 기안자의 업무용 전화번호 및 전자 메일과 교육대상자의 명단(소속, 성명, 직위)이 포함된 문서는 공개 대상이다. 다만, 개인적인 사유로 연가를 신청한 개인의 성명 및 직위는 비공개 대상이다. 셋째, 공익상 필요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및 위촉한 개인의 성명 및 직업은 공개 대상이다. 예를 들어 위원회 위원의 소속 및 직위는 공개 대상이다. 넷째, 공표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은 개인정보는 공개 대상이다. 예를 들어 본인의 동의를 전제로 상훈법 제8조의2에 따라 관보에 공표할 목적으로 작성한 훈·포장 수상자의 정보(성명, 소속, 포상명, 포상일자)는 공개 대상이다. 다섯째,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비공개 대상이다. 문서제목에 민원인의 성명을 포함하면 안 되며, 정보공개 결정통지 내부결재 문서, 법인 등의 상호, 단체명, 영업소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법인 등이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번호 등이 비공개 대상이다. 여섯째,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 문서 생산 시 ‘공개(열람)시점’ 설정 기능을 적극 활용한다.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한다.

다음으로 원문정보의 공개 원칙은 정보공개법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및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의 8가지 비공개 사유²⁾에 해당되지 않으면 모든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원문정보는 대한민국 정보공개포털(<http://www.open.go.kr>)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서비스된다. 2006년 참여정부는 온라인 정보공개청구 시스템을 구축하여 정보검색, 청구, 접수, 결정통지, 수수료납부, 열람에 이르는 정보공개 전 과정을 원스톱 통합서비스로 제공하였다. ‘열린정부’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이 웹 서비스는 이명박정부에서 ‘정보공개시스템’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박근혜정부는 행정정보 원문 공개 서비스를 탑재한 ‘(대한민국) 정보공개포털’로 확장하였다.³⁾

2. 원문정보 공개제도 운영실태

가. 운영 현황

2) 비밀·비공개 정보(제1호), 안보·국방·통일·외교 등 관련 정보(제2호),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공공안전 관련 정보(제3호), 재판·수사 등 관련 정보(제4호),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 관련 정보(제5호), 개인 사생활 침해 관련 정보(제6호), 경영·영업비밀 등 관련 정보(제7호), 투기·매점매석 관련 정보(제8호)

3) 미국은 2009년 5월 “Data.gov” 사이트를 구축하여 일반시민들에게 서비스하고 있다. “Data.gov” 사이트는 미국 오바마 정부의 ‘열린정부 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구축되었으며, 연방정부의 각종 데이터에 대해 일반시민들이 쉽게 접근하여 다운로드를 받아 활용할 수 있다. 영국은 미국의 “data.gov”와 유사한 “data.gov.uk”를 2010년 1월부터 서비스하였다. 공공정보 통합포털인 “Data.gov.uk”는 정부데이터를 검색하고, 청구, 허가받고, 재활용하기 용이하도록 설계되어 운영 중에 있다.

정부는 2014년 3월부터 온나라 시스템을 이용하는 기관의 국장급 이상이 결재한 문서 중 공개로 분류된 결재문서를 정보공개포털을 통하여 공개하고 있다. 각 기관별 원문공개율은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으며, 각 부서 및 기관들은 원문공개율 제고를 요구받고 있다. <표 2>와 <표3>은 정보공개포털을 통한 중앙행정기관 등의 원문공개율이다.

<표 2>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의 원문공개율('15.1.1.~12.31)

구분	전체			본청			소속기관		
	등록건수	공개건수	공개율	등록건수	공개건수	공개율	등록건수	공개건수	공개율
중앙행정기관	228,038	100,648	44.1	100,924	42,976	42.6	127,114	57,672	45.4
지방자치단체	1,493,126	1,024,169	68.6						
교육청	13,144,670	5,307,517	40.4						

<표 3> 중앙행정기관 원문공개율('15.1.1.~12.31)

구분	기관명	전체			구분	기관명	전체		
		등록건수	공개건수	공개율			등록건수	공개건수	공개율
일반행정	소계	1,664	1,101	66.2	경제	소계	4,494	2,139	47.6
	개인정보보호위원회	17	6	35.3		관세청	252	72	28.6
	국무조정실	29	7	24.1		국세청	10	5	50
	국민안전처	600	354	59		국도교통부	561	208	37.1
	민평통 사무처	26	19	73.1		금융위원회	46	19	41.3
	법제처	277	217	78.3		기획재정부	87	12	13.8
	인사혁신처	111	43	38.7		농림축산식품부	340	151	44.4
	행정자치부	604	455	75.3		농촌진흥청	295	153	51.9
사회복지	소계	5,928	3,182	53.7	외교안보	미래창조과학부	323	134	41.5
	고용노동부	452	230	50.9		방송통신위원회	25	15	60
	교육부	435	243	55.9		산림청	630	464	73.7
	국가보훈처	609	432	70.9		산업통상자원부	58	21	36.2
	기상청	254	174	68.5		새만금개발청	46	25	54.3
	문화재청	272	150	55.1		원자력안전위원회	26	16	61.5
	문화체육관광부	924	500	54.1		조달청	539	295	54.7
	병무청	366	202	55.2		중소기업청	171	77	45
	보건복지부	1,591	740	46.5		통계청	150	85	56.7
	식품의약품안전처	349	153	43.8		특허청	161	91	56.5
	여성가족부	70	38	54.3		해양수산부	722	258	35.7
	환경부	606	320	52.8		행복청	52	38	73.1
수사조사교정	소계	3,349	479	14.3	외교안보	소계	1,492	259	17.4
	감사원	44	4	9.1		국방부	435	45	10.3
	경찰청	558	260	46.6		방위사업청	397	88	22.2
	공정거래위원회	69	4	5.8		외교부	566	72	12.7
	국민권익위원회	47	16	34		통일부	94	54	57.4
	대검찰청	1,938	57	2.9					
법무부	693	138	19.9						

8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47권 제1호)

<표 2>, <표 3>과 같이 원문공개율은 지방자치단체(68.6%), 중앙행정기관(44.1%), 교육청(40.4%) 순이다. 중앙행정기관은 소속기관(45.4%)이 본청(42.6%)에 비해 원문공개율이 다소 높다. 또한 47개 부처·청 및 위원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를 포함한 25개 부처·청이 50% 이상의 원문공개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22개 부처·청·위원회는 원문공개율이 50% 미만으로 원문공개율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중앙부처 유형별 원문공개율은 일반행정(66.2%), 사회복지(53.7%), 경제(47.6%), 외교·안보(17.4%), 수사·조사·교정(14.3%) 순이다.

원문공개율이 높은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서울시(62.9%)의 경우 업무관리시스템에서 작성된 기안문의 사본이 문서공개시스템의 맵핑-변환과정을 거쳐 정보소통광장으로 자동 전송되어 시민에게 공개된다. 정보공개 국민점검단은 정보공개 실적성 및 적절성, 수요자의 편의성 등 정보공개 국민 체감도 향상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 원문정보 공개 시 오류 사례

원문정보 공개제도의 시행으로 일선 기관들은 원문정보 공개 대상 문서를 분류함에 있어서 오류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전민일보, JTBC). 행정자치부는 <표 4>와 같이 개인정보를 포함한 문서들이 원문정보 공개로 노출된 사례를 발표하였으며, 공공기관 담당자들의 주의를 요구하였다.

<표 4> 원문정보 공개 노출 사례(행정자치부 2015. 내부문서)

구분	주요문서	오류 내용
시·군·구	1) 사업, 대회참가 등의 보조금 교부결정 관련 문서(계좌번호 등)	① 2015년 ○○○○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② 제○회 ○○도 장애인체육대회 참가보조금 교부결정
	2) 메르스 관리대책 관련 문서(휴대전화번호 등)	① ○○군 메르스 대책지원본부 구성 운영계획 ② 메르스 관리대책본부 구성·운영계획
	3) 사업비용, 시설부담금 등의 납부 관련 문서(계좌번호 등)	① 2015년 ○○○○사업 분담 비용 납부 ② ○○○ 시설부담금 납부
	4) 기타 : 운영관리비, 공적조서 관련(주민등록번호 등)	① ○○군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관리비 지급 ② 2015 ○○시청 ○○○모범조합원(시장표창) 공적심사의결서
교육기관	1) 대회 참가자 및 수상자, 신청자 등의 명단 관련 문서(휴대전화번호 등)	① 2015학년도 ○○○○대회 참가자 명단 ② 2015학년도 ○○○○대회 수상자 명단
	2) 출석부, 출·결석 처리 관련 문서(주민등록번호 등)	① 2015년 ○월 교육과정 및 방과 후 출석부 제출 ② 감염성 질환으로 인한 등교중지 및 출석인정
	3) 수강료, 급식비, 간식비, 참가비 등의 징수 관련 문서	① 2015학년도 1학기 방과후학교 수강료 징수 요구 ② 2015학년도 6월 통학버스운행 및 요금 징수
	4) 수업료, 공공요금, 회비 등의 납부 관련 문서	① 2015학년도 2/4분기 수업료 납부 ② 복합시설 수영장 등 체육시설 공공요금 납부 안내
	5) 사업, 보조금 등의 교부신청 관련 문서	① 2015년 학교배움터 지킴이 사업비 교부 신청 ② 2015년 우수농산물 보조금 교부신청
	6) 기타 : 현금출납부, 확인서, 위원 위촉, 공적조서 관련	① 2015학년도 5월 학교회계 현금출납부 내역 ② 2015년 05월 학교부담금 친환경농산물 공급사실 확인서 제출

<표 4>와 같이 원문정보 공개문서 시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및 비공개 내용이 포함된 경우는 ‘부분공개’ 또는 ‘비공개’로 분류하고 기안자가 공개 분류한 경우 결재자는 개인정보 포함 여부를 확인한 후 결재해야 한다. 특히 jpg 등 그림파일의 경우 시스템에서 개인정보를 필터링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에 대해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정부가 구축한 ‘원문공개시스템 개인정보필터링’ 시스템 상에서 패턴 인식이 어렵거나 벗어난 개인정보는 걸러지지 않고 그대로 공개된다. 개인정보 중 정형화된 주민번호 사이에 빈 공간이 있거나, 3자리 이상의 이름 등은 필터링 과정에서 패턴이 벗어난 경우로서 반드시 주의가 요구된다. 공무원들이 원문공개 대상 정보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일일이 개인정보를 삭제해야 한다. 그러나 매일 방대한 자료가 생산되는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의 실수로 개인정보가 노출될 개연성은 매우 높으며, 개인정보필터링시스템의 추가 보완이 요구된다.

Ⅲ. 연구 설계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설문문항은 기존 선행연구에서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측정도구를 활용⁴⁾하였으며, 일부 설문문항의 경우 본 연구의 내용에 적합하게 수정하여 활용하였다. 설문문항은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연구목적에 포함된 내용을 포함하여 총 9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설문문항은 5점 척도를 기준으로 설정하였으며, 3회의 전문가 회의를 통해 그 객관적 타당성을 검증하고 수정받았다.

설문조사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교육과정 및 국립중앙도서관의 사서교육과정에 참여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2015년 11월 2일부터 11월 27일까지 4주간 온라인 및 오프라인 방식으로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시 연구방법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2014년 이후 최소 10건 미만의 전자문서를 생산 또는 결재한 공무원은 제외하였다. 그 결과 <표 5>와 같이 총 339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표 5> 설문조사의 인구통계자료

구분	내용	건수	비율
연령	20대	15	4.4%
	30대	150	44.2%
	40대	129	38.1%
	50대	45	13.3%
	계	339	100.0%

4) 한국행정연구원은 2010년 「정보공개제도의 진단과 개선 방안 연구」를 실시하였으며, 인터뷰 조사, 설문조사, 현장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정보공개제도 운영상의 문제점, 법률적 개선 방안, 제도의 순기능 및 역기능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항목을 준용하였으며, 원문정보 공개제도 자체에 대한 이론적 타당성은 본 연구에서 제외하기로 함.

학력	고졸	3	0.9%
	대졸	246	72.6%
	대학원석사졸업	69	20.4%
	대학원박사졸업	21	6.2%
	계	339	100.0%
직렬	행정직	162	47.8%
	사서직	111	32.7%
	공업직	6	1.8%
	시설직	3	0.9%
	전산직	27	8.0%
	기타	30	8.8%
계	339	100.0%	
직급	9급	9	2.7%
	8급	45	13.3%
	7급	84	24.8%
	6급	96	28.3%
	5급	90	26.5%
	4급이상관리자	15	4.4%
	계	339	100.0%
종류	국가직	163	48.1%
	지방직	176	51.9%
	계	339	100.0%

수집된 자료는 SPSS 20.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각 주요 변인들의 빈도, 평균, 표준편차 등을 살펴보기 위하여 기술통계를, 각 변인들 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T-검증 및 일원 배치 분산분석을 수행하였다. 기술통계는 원문정보 공개제도의 현황을 파악하고 정책대안의 경험적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적용되었다.

IV. 설문결과

1. 제도운영의 이해도

원문정보 공개제도의 이해도에 대한 설문조사는 (1) 정보공개제도의 이해, (2) 정보공개제도 중 원문정보 공개제도의 이해, (3) 원문정보 공개제도의 법적 근거 (4) 원문정보 공개제도의 목적, (5) 원문정보 공개제도의 공개절차, (6) 정보공개법에 대한 이해(7) 원문공개 시 비공개·부분공개 결정의 기준 (8) 대한민국 정보공개포털에 대해서 이해도를 측정하였다.

〈표 6〉 원문정보 공개제도의 이해도

설문 문항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정보공개제도의 이해	338	1	5	3.23	.785
정보공개제도 중 원문정보 공개제도의 이해	339	1	5	3.13	.882
원문정보 공개제도의 법적 근거	339	1	5	2.94	.897
원문정보 공개제도의 목적	339	1	5	3.13	.882
원문정보 공개제도의 공개절차	339	1	5	2.96	.83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이해	338	1	5	3.23	.785
원문정보 공개 시 비공개·부분공개 기준의 이해	339	1	5	3.13	.882
대한민국 정보공개 포털 이해	339	1	5	3.07	.911

〈표 6〉과 같이 공무원의 경우 정보공개제도(3.23)와 원문정보 공개제도(3.13)에 대해서는 높은 이해도가 나타났으나, 상대적으로 원문정보 공개제도의 법적 근거(2.94) 및 공개절차(2.96)에 대해서 낮은 이해도를 나타냈다. 따라서 원문정보 공개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 및 공개절차에 대한 교육 및 제고의 노력이 필요하다.

원문정보 공개제도의 이해도 항목에 대하여 국가직 공무원과 지방직 공무원 사이에 인식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T-test를 실시하였다.

〈표 7〉 국가직 및 지방직 공무원간의 원문정보 공개제도의 이해도에 대한 T-test 결과

설문 항목	종류	N	평균	표준편차	t
정보공개제도의 이해	국가직	162	3.27	.892	.984
	지방직	176	3.19	.671	
정보공개제도 중 원문정보 공개제도의 이해	국가직	163	3.17	.879	.784
	지방직	176	3.10	.886	
원문정보 공개제도의 법적 근거	국가직	163	3.10	.976	3.207**
	지방직	176	2.79	.790	
원문정보 공개제도의 목적	국가직	163	3.17	.879	.784
	지방직	176	3.10	.886	
원문정보 공개제도의 공개절차	국가직	163	3.13	.890	3.561***
	지방직	176	2.81	.74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이해	국가직	162	3.27	.892	.984
	지방직	176	3.19	.671	
원문정보 공개 시 비공개·부분공개 기준의 이해	국가직	163	3.17	.879	.784
	지방직	176	3.10	.886	
대한민국 정보공개포털 이해	국가직	163	3.26	.947	3.704***
	지방직	176	2.90	.842	

** $p < .01$, *** $p < .001$

〈표 7〉과 같이 국가직 및 지방직 공무원 간의 원문정보 공개제도의 법적 근거($t=3.207$), 절차($t=3.561$), 대한민국 정보공개포털 이해도($t=3.704$)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

다($\rho < .01, \rho < .001$). 국가직 공무원이 지방직 공무원보다 원문정보 공개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 절차, 대한민국 정보공개포털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것으로 알 수 있다. 추가적으로 원문정보 공개제도에 대한 직급별 이해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8〉 직급별 원문정보 공개제도의 이해도 차이

설문 항목	직급별	N	평균	표준편차	F	Scheffé
정보공개제도의 이해	9~8급	54	2.78	.925	17.614***	5급 이상> 7급~6급> 9급~8급
	7~6급	179	3.20	.720		
	5급 이상	105	3.51	.695		
	합계	338	3.23	.785		
정보공개제도 중 원문정보 공개제도의 이해	9~8급	54	3.06	1.089	1.116	-
	7~6급	180	3.20	.794		
	5급 이상	105	3.06	.908		
	합계	339	3.13	.882		
원문정보 공개제도의 법적 근거	9~8급	54	2.61	1.071	13.665***	5급 이상> 7급~6급> 9급~8급
	7~6급	180	2.83	.759		
	5급 이상	105	3.29	.917		
	합계	339	2.94	.897		
원문정보 공개제도의 목적	9~8급	54	3.06	1.089	1.11	-
	7~6급	180	3.20	.794		
	5급 이상	105	3.06	.908		
	합계	339	3.13	.882		
원문정보 공개제도의 공개절차	9~8급	54	2.72	.998	4.95**	5급 이상> 9급~8급
	7~6급	180	2.93	.774		
	5급 이상	105	3.14	.802		
	합계	339	2.96	.83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이해	9~8급	54	2.78	.925	17.614***	5급 이상> 7급~6급> 9급~8급
	7~6급	179	3.20	.720		
	5급 이상	105	3.51	.695		
	합계	338	3.23	.785		
원문정보 공개 시 비공개·부분공개 기준의 이해	9~8급	54	3.06	1.089	1.11	-
	7~6급	180	3.20	.794		
	5급 이상	105	3.06	.908		
	합계	339	3.13	.882		
대한민국 정보공개 포털 이해	9~8급	54	3.06	.979	0.23	-
	7~6급	180	3.07	.856		
	5급 이상	105	3.09	.972		
	합계	339	3.07	.911		

** $\rho < .01$, *** $\rho < .001$

<표 8>과 같이 공무원 직급별 원문공개 제도의 이해도 차이에서, 정보공개제도의 이해($F=17.614, \rho <.001$), 원문정보 공개제도의 법적 근거($F=13.665, \rho <.001$), 원문정보 공개제도의 공개절차($F=4.95, \rho <.0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이해($F=17.614, \rho <.001$)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Scheffé검증을 통한 사후 검증의 결과를 보면 정보공개제도의 이해와 원문공개 제도의 법적 근거, 관련 법률의 이해도는 5급 이상의 관리자들이 6급 이하의 하위직들 보다 제도의 이해도가 높았다. 원문정보 공개의 법적 근거의 경우는 7급부터 6급까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5급 이상의 관리자들이 9급과 8급보다 이해도가 높게 나타났다. 즉 관리자급 공무원 집단에서 제도의 이해도가 높게 나타났다

2. 원문정보 공개제도의 순기능

원문정보 공개제도의 순기능에 대한 설문조사는 (1) 국정운영참여 활성화, (2) 알권리 보장, (3) 국민의 삶의 질 향상, (4) 행정의 투명성 확보, (5) 국민의 권익보호, (6) 업무의 생산성 향상 등 여섯 가지이다.

<표 9> 원문정보 공개제도의 순기능

질문항목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국정 운영 참여 활성화	339	1	5	3.23	.825
국민의 알권리 보장	339	1	5	3.04	.768
국민의 삶의 질 향상	339	1	5	3.23	.825
행정의 투명성 확보	339	1	5	3.52	.815
국민의 권익 보호	339	1	5	3.23	.825
업무 생산성 향상	339	1	5	2.72	.873

<표 9>와 같이 원문정보 공개제도는 행정의 투명성 확보(3.52)에서 가능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다음으로 국정운영 참여 활성화(3.23), 국민의 삶의 질 향상(3.23), 국민의 권익 보호(3.23) 순으로 순기능적 기대치를 나타냈다. 다만, 업무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라는 순기능은 정보공개제도가 오히려 업무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부담이 된다는 선행연구(한국행정연구원 2010, 212)과의 차이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추가적으로 원문정보 공개제도에 대한 직급별 순기능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10> 직급별 원문정보 공개제도에 대한 순기능의 차이

설문 항목	직급별	N	평균	표준편차	F	Scheffé
국정운영참여 활성화	9~8급	54	3.22	.861	15.303***	5급 이상> 7급~6급, 9급~8급
	7~6급	180	3.03	.762		
	5급 이상	105	3.57	.807		
	합계	339	3.23	.825		

14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47권 제1호)

국민의 알권리 보장	9~8급	54	3.06	.712	12.008***	5급 이상> 7급~6급, 9급~8급
	7~6급	180	2.87	.750		
	5급 이상	105	3.31	.751		
	합계	339	3.04	.768		
국민의 삶의 질 향상	9~8급	54	3.22	.861	15.303***	5급 이상> 7급~6급, 9급~8급
	7~6급	180	3.03	.762		
	5급 이상	105	3.57	.807		
	합계	339	3.23	.825		
행정의 투명성 확보	9~8급	54	3.67	.824	11.228***	5급 이상> 7급~6급, 9급 이상> 7급~6급
	7~6급	180	3.33	.777		
	5급 이상	105	3.77	.800		
	합계	339	3.52	.815		
국민의 권익 보호	9~8급	54	3.22	.861	15.303***	5급 이상> 7급~6급,
	7~6급	180	3.03	.762		
	5급 이상	105	3.57	.807		
	합계	339	3.23	.825		
업무 생산성 향상	9~8급	54	2.56	.965	12.427***	5급 이상> 7급~6급,
	7~6급	179	2.56	.679		
	5급 이상	105	3.06	1.017		
	합계	338	2.72	.873		

*** $p < .01$, **** $p < .001$

<표 10>과 같이 공무원 직급별 원문정보 공개제도의 순기능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설문문항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Scheffé검증을 통한 사후 검증 결과는 5급 이상의 관리자들이 6급 이하의 하위직들보다 원문정보 공개제도의 순기능적인 측면을 높게 인식하고 있다.

3. 원문정보 공개제도의 역기능

원문정보 공개제도의 역기능에 대한 설문조사는 (1) 국가안보저해, (2) 행정업무 부담 증가, (3) 사생활보호권(개인정보) 침해, (4) 경제적 목적으로 사용(경쟁기업의 비밀유출), (5) 범죄자/범죄 집단에 의한 악용, (6) 공무원의 사기 저하, (7) 국민사이의 정보격차 발생 등 일곱 가지이다.

<표 11> 원문정보 공개제도의 역기능

질문문항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국가 안보 저해	339	1	5	2.72	.759
행정업무 부담 증가	339	2	5	3.58	.818
사생활보호권(개인정보) 침해	339	1	5	3.12	.808
경제적 목적으로 사용(경쟁 기업의 비밀유출)	339	2	5	2.94	.769
범죄자/범죄 집단에 의한 악용	339	1	5	2.86	.789
공무원의 사기 저하	339	1	5	3.33	.908
국민사이의 정보격차 발생	339	1	5	3.29	.870

<표 11>와 같이 원문정보 공개제도의 역기능은 행정업무 부담 증가(3.58)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공무원의 사기저하(3.33), 국민사이의 정보격차 발생(3.29), 사생활보호권 침해(3.12) 순으로 제도의 역기능을 우려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행정연구원(2010)의 정보공개제도의 역기능인 행정업무 부담 증가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직급별 원문정보 공개제도에 대한 역기능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12> 직급별 원문정보 공개제도에 대한 역기능의 차이

설문 항목	직급별	N	평균	표준편차	F	Scheffé
국가 안보 저해	9~8급	54	2.61	.685	.695	-
	7~6급	180	2.75	.676		
	5급 이상	105	2.71	.917		
	합계	339	2.72	.759		
행정업무 부담 증가	9~8급	54	3.72	.878	2.19	-
	7~6급	180	3.62	.779		
	5급 이상	105	3.46	.844		
	합계	339	3.58	.818		
사생활보호권 (개인정보) 침해	9~8급	54	3.17	.694	.88	-
	7~6급	180	3.15	.835		
	5급 이상	105	3.03	.814		
	합계	339	3.12	.808		
경제적 목적으로 사용 (경쟁 기업의 비밀유출)	9~8급	54	2.72	.811	2.911	-
	7~6급	180	2.95	.719		
	5급 이상	105	3.03	.814		
	합계	339	2.94	.769		
범죄자/범죄집단에 의한 악용	9~8급	54	3.00	.890	2.106	-
	7~6급	179	2.78	.691		
	5급 이상	105	2.91	.878		
	합계	338	2.86	.789		
공무원의 사기 저하	9~8급	54	3.33	1.116	7.592**	7급~6급> 5급 이상 9급~8급> 5급 이상
	7~6급	180	3.48	.766		
	5급 이상	105	3.06	.959		
	합계	339	3.33	.908		
국민사이의 정보격차 발생	9~8급	54	3.44	.904	5.80**	9급~8급> 5급 7급~6급>5급
	7~6급	180	3.38	.800		
	5급 이상	105	3.06	.928		
	합계	339	3.29	.870		

** $\rho < .01$

<표 12>와 같이 공무원 직급별 원문정보 공개제도의 역기능에 대한 인식차이는 공무원의 사기 저하($F=7.592, \rho < .01$), 국민사이의 정보격차 발생($F=5.80, \rho < .01$)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Scheffé검증을 통한 사후 검증 결과는 6급 이하의 하위직 공무원들이 5급 이상의 관리직 공무원보다 원문정보 공개를 통한 공무원 사기 저하 및 국민 사이의 정보격차 발생을 우려하고 있다. 이것은 직급별 원문정보 공개제도의 이해도와 순기능과는 대조되는 결과

이다. 따라서 6급 이하의 하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원문정보 공개제도에 대한 교육 및 홍보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4. 원문정보 공개제도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

원문정보 공개제도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에 대한 설문조사는 (1) 불명확한 원문정보 공개 기준, (2) 기관마다 상이한 원문정보 공개 기준, (3) 일관성 없는 원문정보 공개 결정 방식, (4) 공무원의 자의적 원문공개 결정, (5) 원문정보 공개제도 확대에 따른 업무량 과다, (6) 민원인(국민)에 의한 원문정보 공개제도 오남용 (7) 원문정보 공개에 따른 심리적 부담감 (8) 복잡한 원문정보 공개절차 등 여덟 가지이다.

<표 13> 원문정보 공개제도의 발전을 저해하는 원인

질문 문항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불명확한 원문정보 공개 기준	339	2	5	3.60	.673
기관마다 상이한 원문정보 공개 기준	339	1	5	3.62	.736
일관성 없는 원문정보 공개 결정 방식	337	2	5	3.61	.771
공무원의 자의적 원문정보 공개 결정	339	2	5	3.34	.806
원문정보 공개제도 확대에 따른 업무량 과다	339	1	5	3.69	.766
민원인에 의한 원문정보 공개제도 오남용	339	2	5	3.80	.767
원문정보 공개에 따른 심리적 부담감	339	1	5	3.69	.766
복잡한 원문정보 공개절차	339	2	5	3.41	.725

<표 13>과 같이 원문정보 공개제도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민원인에 의한 원문정보 오남용(3.80)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제도 확대에 따른 업무량 과다(3.69), 원문정보 공개에 따른 심리적 부담감(3.69), 기관마다 상이한 원문정보 공개 기준(3.62)순으로 나타났다. 원문정보 공개제도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에 대한 조속한 해결책 마련과 각 사항별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원문정보 공개제도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에 대한 국가직 공무원과 지방직 공무원의 인식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T-test를 실시하였다

<표 14> 국가직 및 지방직 공무원간의 원문정보 공개제도 발전 저해요인에 대한 T-test 결과

설문 항목	종류	N	평균	표준편차	t
불명확한 원문정보 공개 기준	국가직	163	3.54	.696	-1.63
	지방직	176	3.66	.648	
기관마다 상이한 원문정보 공개 기준	국가직	163	3.52	.819	-2.47*
	지방직	171	3.72	.635	

일관성 없는 원문정보 공개 결정 방식	국가직	163	3.63	.721	.791
	지방직	174	3.60	.818	
공무원의 자의적 원문정보 공개 결정	국가직	163	3.36	.844	.668
	지방직	176	3.32	.772	
원문정보 공개 제도 확대에 따른 업무량 과다	국가직	163	3.73	.802	.358
	지방직	176	3.65	.732	
민원인에 의한 원문정보 공개제도 오남용	국가직	163	3.72	.850	.069
	지방직	176	3.87	.676	
원문정보 공개에 따른 심리적 부담감	국가직	163	3.73	.802	.920
	지방직	176	3.65	.732	
복잡한 원문정보 공개절차	국가직	163	3.42	.784	.806
	지방직	176	3.40	.668	

* $\rho < .05$

<표 14>와 같이 국가직 및 지방직 공무원간의 원문정보 공개제도의 발전 저해요인분석 결과는 대부분의 영역에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다만, 기관마다 상이한 원문정보 공개기준 ($t = -2.47, \rho < .01$)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표 7>의 결과와 같이 국가직 및 지방직 공무원들의 원문정보 공개제도에 대한 이해도 차이와 유사한 결과이다.

5. 원문정보 공개제도 활성화를 위한 요인

원문정보 공개제도의 활성화 요인과 관련한 설문조사는 ((1) 상세한 비공개 원문정보 기준 제시, (2) 기관별 비공개 근거 지침 마련, (3) 원문정보 오남용 방지 대책 마련, (4) 원문정보 공개제도에 대한 교육 시행, (5) 원문정보 공개를 꺼리는 조직문화 개선, (6) 원문정보 공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개선, (7) 원문정보 공개 절차 및 원칙에 대한 사전 교육 등 일곱 가지이다.

<표 15> 원문정보 공개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요인

질문 문항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상세한 비공개 원문정보 기준제시	339	2	5	3.73	.766
기관별 비공개 근거 지침 마련	339	2	5	3.68	.733
원문정보 오남용방지 대책 마련	339	2	5	3.77	.705
원문정보 공개제도에 대한 교육 시행	339	2	5	3.73	.733
원문정보 공개를 꺼리는 조직문화 개선	339	1	5	3.54	.730
원문정보 공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개선	339	2	5	3.73	.766
원문정보 공개 절차 및 원칙에 대한 사전 교육 실시	339	2	5	3.77	.705

<표 15>와 같이 원문정보 공개제도 활성화 요인과 관련한 설문은 모든 문항에서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원문정보 오남용 방지 대책 마련(3.77), 원문정보 공개 절차 및 원칙에 대한 사전 교육(3.77), 상세한 비공개 원문정보 기준제시(3.73), 제도에 대한 공무원 교육 시행(3.73), 원문정보 공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개선(3.7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원문정보 공개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원문정보 공개대상 기관들은 단순 계획, 예산 집행, 신청, 요청 등 유용성이 낮은 정보보다는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정보(결과보고, 감사, 규제 등)의 비공개정보를 최소화하여 공개해야 한다. 정보공개 청구가 빈번하게 청구되는 문서의 유형 분석을 통하여 사전에 원문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 내부검토 또는 의사결정과정으로 비공개하는 경우(비공개 5호) 비공개사유가 소멸하는 시점에 공개토록 하는 “공개일자” 설정 기능을 적극 활용하여 공개 전환해야 한다.

한편, 직급별 원문정보 공개제도 활성화 요인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일원배치분산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16> 직급별 원문정보 공개제도 활성화 요인의 차이

설문 항목	직급별	N	평균	표준편차	F	Scheffé
비공개 원문정보 기준제시	9~8급	54	3.44	.769	4.980**	5급 이상> 7급~6급> 9급~8급
	7~6급	180	3.77	.694		
	5급 이상	105	3.83	.849		
	합계	339	3.73	.766		
비공개 근거 지침 마련	9~8급	54	3.61	.763	4.46*	5급 이상> 7급~6급, 9급~8급
	7~6급	180	3.60	.665		
	5급 이상	105	3.86	.802		
	합계	339	3.68	.733		
원문정보 오남용방지 대책	9~8급	54	3.83	.607	1.906	-
	7~6급	180	3.72	.662		
	5급 이상	105	3.83	.814		
	합계	339	3.77	.705		
원문정보 공개제도에 대한 교육 시행	9~8급	54	3.89	.572	1.659	-
	7~6급	180	3.68	.721		
	5급 이상	105	3.71	.817		
	합계	339	3.73	.733		
원문정보 공개를 꺼리는 조직문화 개선	9~8급	54	3.39	.834	3.571*	-
	7~6급	180	3.50	.564		
	5급 이상	105	3.69	.891		
	합계	339	3.54	.730		
원문정보 공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개선	9~8급	54	3.44	.769	4.94**	5급 이상> 7급~6급> 9급~8급
	7~6급	180	3.77	.694		
	5급 이상	105	3.83	.849		
	합계	339	3.73	.766		
원문정보 공개 절차 및 원칙에 대한 사전 교육 실시	9~8급	54	3.83	.607	1.09	-
	7~6급	180	3.72	.662		
	5급 이상	105	3.83	.814		
	합계	339	3.77	.705		

* $p < .05$ ** $p < .01$

<표 16>과 같이 공무원 직급별 원문정보 공개제도의 활성화 요인으로 비공개 원문정보 기준 제시($F=4.980, \rho <.01$), 비공개 근거 지침 마련($F=4.46, \rho <.05$), 원문정보 공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개선($F=4.94, \rho <.01$)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로 나타났다. Scheffé 검증을 통한 사후 검증 결과는 비공개 원문정보 기준 제시와 비공개 근거 지침 마련, 부정적인 인식개선에서 9급에서 7급까지의 하위직 공무원보다는 5급 이상의 관리직 공무원에서 개선방안의 필요성을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하위직 공무원들이 상신한 행정문서의 결재 행위 시 관리직 공무원들이 보다 정확하고 구체적인 비공개 원문정보 기준 및 근거 마련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V. 결론

본 연구는 정부의 원문정보 공개제도 운영 현황을 조사하고, 원문정보 생산자이자 공개·비공개를 결정하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원문정보 공개제도에 대한 이해도, 제도의 순기능 및 역기능, 제도 발전의 저해요인 및 활성화 요인을 조사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공개제도와 원문정보 공개제도에 대한 공무원들의 일반적인 이해도는 높았으나, 상대적으로 원문정보 공개제도의 법적 근거, 공개절차 등은 낮게 나타났다. 특히, 국가직 공무원이 지방직 공무원보다 원문정보 공개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 절차, 정보공개포털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다. 5급 이상의 관리자들이 6급 이하의 하위직보다 전반적인 제도 이해도가 높았다. 원문정보 공개제도를 위해 지방직 공무원 및 하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제도의 법적근거, 공개절차, 정보공개포털에 대한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

둘째, 원문정보 공개제도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순기능은 행정의 투명성 확보, 국정운영 참여 활성화, 국민의 삶의 질 향상, 국민의 권익 보호 측면에서 기대치가 높았다. 역기능은 행정적인 업무 부담 증가, 공무원의 사기저하, 국민사이의 정보격차 발생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직급별로는 5급 이상의 관리자들이 6급 이하의 하위직보다 원문정보 공개제도의 순기능적인 측면을 높게 판단하고 있다. 역기능은 6급 이하의 하위직들이 5급 이상의 관리자들보다 원문정보 공개제도에 따른 공무원 사기 저하, 국민들 사이의 정보격차 발생을 우려하고 있다. 원문정보 공개제도의 역기능은 선행연구 등에서 언급된 정보공개제도의 역기능과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셋째, 원문정보 공개제도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은 민원인에 의한 원문정보 오남용, 제도 확대에 따른 업무량 과다, 원문정보 공개에 따른 심리적 부담감, 기관마다 상이한 원문정보 기준 순으로 나타났다. 국가직 및 지방직 공무원 간의 원문정보 공개제도의 발전 저해요인은

대부분의 영역에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원문정보 공개율이 낮은 부서 및 기관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 및 컨설팅 등으로 제도의 발전을 저해하는 원인요인에 대하여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

넷째, 원문정보 공개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요인은 원문정보 오남용 방지 대책 마련, 원문정보 공개 절차 및 원칙에 대한 사전 교육, 비공개 원문정보 공개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제시, 공무원 대상 교육 및 부정적인 인식 개선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직급별로 원문정보 공개제도 활성화 요인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었으며, 6급 이하의 하위직 공무원보다 5급 이상의 관리직 공무원에서 비공개 원문정보 기준 제시, 비공개 근거 지침 마련, 부정적인 인식 개선 요인의 필요성이 높게 나타났다.

원문정보 공개제도는 수요자 중심의 정보공개 활성화 제도이다. 단순히 원문정보 공개율을 높이기 위한 원문정보 생산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필요한 정보를 일관된 원칙과 기준에 맞추어 제공되도록 노력해야한다. 기관의 책임자들은 기관별 원문정보 공개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원문정보 공개제도에 대한 관심과 제도적 뒷받침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다만, 본 연구는 전체 공무원 집단의 직렬별 구성분포를 고려했을 때 특정 직렬의 공무원들이 설문조사에 상대적으로 많이 참여하였다는 것에 연구 한계점이 있다. 차기 연구에는 공무원들의 다양한 직렬별, 업무 기능별 세분화를 통하여 원문정보 공개제도에 대한 인식조사와 현 원문정보 공개제도 운영의 개선방향 도출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 국민권익위원회. 2014. 『공공기관 정보공개 담당자 연찬회 자료집』. 세종: 국민권익위원회.
- 김승태. 2009. 전자적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실태 평가. 『한국지역정보학회지』, 12(3): 51-82.
- 김혜원. 2014. 『사전정보공개제도의 운영 및 서비스에 대한 개선 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성대학교 대학원 기록관리학전공.
- 서울특별시. 2014. 『2014년 정보공개업무 매뉴얼』. 서울: 서울특별시 정보공개정책과.
- 서울특별시. 2015. 『2015 정보공개 사례집』. 서울: 서울특별시 정보공개정책과.
- 안은정. 2013. 『행정정보공개제도에 대한 경남교육행정공무원의 인식분석』.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행정전공.
- 정민영. 2015. 『원문공개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분석 및 방향성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부대학교 대학원 기록관리학전공.
- 정진임, 김유승. 2014. 정부3.0 시대, 정보공개시스템의 개선 과제. 『기록학연구』, 39: 45-72.

- 최정민, 김유승. 2013. 국내 정보공개 연구 동향 분석.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3(3): 173-197.
- 최정민. 2015. 중앙행정기관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대응성 분석. 『기록학연구』, 45: 155-188.
- 한국행정연구원. 2010. 『정보공개제도의 진단과 개선방안 연구』. 서울: 한국행정연구원.
- 행정자치부(공개문서). 2014. 『원문정보 공개 가이드(공개/비공개 분류기준)』. 서울: 행정자치부.
- 행정자치부(내부문서). 2015. 『원문공개 대상문서 분류 오류사례 안내』. 서울: 행정자치부.
- 홍석형. 2014. 『정보공개시스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기록관리학전공.
- 황진현, 임진희. 2015. 체계적인 원문정보공개를 위한 정부산하공공기관 기록관리시스템 기능요건 연구. 『기록학연구』, 46: 325-363.
- 전민일보 <<http://www.jeon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8912>>. [인용 2016. 2. 15].
- 정보공개포털 원문정보대상 <<https://www.open.go.kr/pa/help/openSite/wonmunGvrn.do>> [인용. 2016. 2. 15].
- 정보공개포털 원문정보공개율 <<https://www.open.go.kr/>> [인용. 2016. 2. 15].
- JTBC 8시뉴스(2015년8월26일). “주민등록번호가 버젓이…정부자료에 ‘개인정보’ 출출<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010209>. [인용 2016. 2. 15].

국한문 참고문헌의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A Study on Functional Requirements of Records Management Systems for Government-Affiliated Organizations to respond to Immediate Disclosure of Original Official Documents. *Korean Society of Archival Studies*, 46: 325-363.
- An, eun-jeong. 2013. *Analysis of the Gyeongsangnam-do Educational Administration Officers' Perception on the Open Administration Information System*.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2014. *Public Organizations Information Disclosure Seminar Sourcebook*. Sejong: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 Choi, Jeong Min Choi, Kim, You-seung. 2013. “A Study on the Research Trends of Information Freedom in Korea.” *Journal of Korea Society of Information Management*, 13(3): 173-197
- Choi, Jeong Min. 2015. “Responsiveness of Request to Information Disclosure.”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45: 155-188.

- Hong, Seok-Hyung. 2014.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Freedom of Information System*.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 ang University
- Jeng Min-Yuong. 2015. *Research on Institutional Analysis and Direction for Activating the Original Public Servi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Joongbu University, ChongNaml, Korea.
- Jeonmin. <<http://www.jeon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8912>> [cited 2016. 2. 15].
- JTBC News.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010209> [cited 2016. 2. 15].
- Jung, Zin-Im, Kim, You-Seung. 2014. "Government 3.0 Era, Issues on Freedom of Information System."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39: 45-72.
- Kim, Hye-Won. 2014.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Operation and Services for the Proactive Disclosure*.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sung University, Seoul, Korea.
- Kim, Seung-Tae. 2009. "The Performance and Limitation of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for Public Management*, 23(4): 119-147.
-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2010. *Research on Diagnosis of Public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for Improvement*. Seoul: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 Ministry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Home Affairs. 2014. *Full-text Information Disclosure Guideline*. Seoul: Ministry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Home Affairs.
- Ministry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Home Affairs. 2015. *Full-text Information Disclosure Error Sourcebook*. Seoul: Ministry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Home Affairs.
-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2014. *2014 Information Disclosure Working Manual*. Seoul: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2015. *2015 Information Disclosure Practices*. Seoul: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